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 공급대상 : 556세대 중 공공분양주택 263세대 [전용면적 59㎡]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 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에 유의)
- 부부(예비신혼부부는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종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 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청약 예·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고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도금 대출이 추진될 경우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동작구수방사 총 556세대 중 263세대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며, 군관사(20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85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9.30.(월)**이며, 이는 청약 자격(청약 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000586이며, 공고문 및 팝플랫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과 관련하여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공휴일 및 주말에도 관람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의 운영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예약 없이 관람 가능하며, 청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59A 실물 견본세대), 사이버 견본주택(59A 실사 VR, 59B VR) 및 팝플랫 내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정	운영시간	비고	문의전화
사전청약 당첨자	2024.10.2.(수) ~ 10.5.(토)	10.2.(수) : 13:00 ~ 17:00 10.3.(목) ~ 10.8.(화) : 10:00 ~ 17:00	10.3.(목) 공휴일, 10.5.(토) 관람 가능	☎ 02-407-8222
사전청약 당첨자 외	2024.10.6.(일) ~ 10.8.(화)	10.6.(일) 관람 가능		

* 견본주택 위치 : 뉴:홈 위례홍보관[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본점역 1번 출구 앞)]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www.lhds.c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에 'ANDANTE' 단독 또는 'ANDANTE+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 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 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사전청약 당첨자 및 기관추천자 제외),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종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 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거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지 않은 분)하는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무주택 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신청자격 검증 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우선공급(순위자)
무주택 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부적격당첨 제한 등		세대구성원						
세대주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과거 주택소유 이력 (시전청약 공고일부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혼부부 (혼인신고일~공고일)	세대구성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주자저축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불필요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 선납금 포함 6백만원 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신청자 본인 (가입자)
소득	해당 없음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부동산, 자동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7,080천원 이하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7,080천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은)**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다)]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증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주택)이며,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2024.10.31.)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2024.10.31.)	3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거주의무	거주의무 개시일	3년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을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 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4년, 2025년)

공 고	접 수		당첨자발표	서 류 제 출		선택 품 목 결정	계 약	
	시전청약 당첨자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당첨자	예비자		전자	현장
24.9.30.(월)	24.10.10.(목) 10:00 ~10.11.(금) 17:00	24.10.14.(월) 10:00~17:00	24.10.15.(화) 10:00~17:00	24.10.31.(목) 14:00	24.11.11.(월) ~11.12.(화) 10:00~16:00	24.11.13.(수) ~11.14.(목) 10:00~16:00	25.2.18.(화) ~2.19.(수) 10:00~16:00	25.2.24.(월) ~2.25.(화) 10:00~16:00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뉴:홈 위례홍보관 (복정역 1번 출구)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뉴:홈 위례홍보관 (복정역 1번 출구)

* 서류제출 및 계약 장소 : 뉴:홈 위례홍보관[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복정역 1번 출구 앞)]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2025.2.24.(월) ~ 2.25.(화) 10:00 ~ 16:00] 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기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체결기간에 뉴:홈 위례홍보관(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에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공사가 관할 자치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현장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수분양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전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자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청약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을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아래 예시는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 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자격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을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큰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 불가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 제한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 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 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 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I |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동작구수방사(총 556호) 중 공공분양주택 3~35층 3개동 전용면적 59㎡ 263세대

2. 공급대상

지구	주택 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공공분양 공급세대수(총 263세대)							군관사	행복 주택	최고 총수	최하층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특별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평)		디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신생아	국가 유공자	기타 특별											
동작구 수방사	59	59A	확장	59.86	30.0523	13.0211	40.7947	143.7281	32.4063	263	224	4	4	6	2	8	2	4	9	'28.12월							
		59B	확장	59.81	30.0272	13.0103	40.7606	143.6081	32.3793																		

- ※ 금회는 공공분양(263세대)만 공급하며, 군관사(208세대)를 제외한 행복주택(85세대)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접수 마감 후 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본청약 공급물량(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 물량 포함)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신청접수 미달 시에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 청약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59)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59A/59B)**은 불가합니다.
-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 신청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기간 미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원활하여야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밸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2)로 표기하였습니다.(m^2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2 \times 0.3025$ 또는 $m^2 \div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최하층 세대수는 향후 행복주택으로 공급될 최하층 세대수를 제외한 세대수입니다.

3. 공급금액(밸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품목 금액 별도)

[단위 : 천원]

■ 분양가격·납부조건 등 안내

형별	타입	총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5%	2차 중도금 15%	잔금	용지금 (주택도시기금)
					계약 시	'26.5.27	'27.9.27		
59	59A	3층	기본형	924,670	92,467	138,700	138,700	499,803	55,000
			마이너스옵션	894,998	89,499	134,249	134,249	482,001	55,000
		4층	기본형	943,730	94,373	141,559	141,559	511,239	55,000
			마이너스옵션	914,058	91,405	137,108	137,108	493,437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953,270	95,327	142,990	142,990	516,963	55,000
			마이너스옵션	923,598	92,359	138,539	138,539	499,161	55,000
	59B	3층	기본형	923,900	92,390	138,585	138,585	499,340	55,000
			마이너스옵션	894,253	89,425	134,137	134,137	481,554	55,000
		4층	기본형	942,950	94,295	141,442	141,442	510,771	55,000
			마이너스옵션	913,303	91,330	136,995	136,995	492,983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952,480	95,248	142,872	142,872	516,488	55,000
		5층 ~최상층	마이너스옵션	922,833	92,283	138,424	138,424	498,702	55,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총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총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밸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세제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 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 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응자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응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응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4. 추가선택품목

■ 공간선택(무상옵션) 안내

-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25.2.18.~2.19.)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별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팜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주택형	선택사항(아래 유형 중 택1)		비 고
	기본형	공간확장형	
59A/B	침실2 / 침실3 분리	④ 침실2 / 침실3 통합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1가지 선택

■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가구, 쿡탑,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등

-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25.2.18.~2.19.)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비용(밸코니 확장비용 포함)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1)은 선택 불가합니다.**
-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팜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59A의 경우 아래 선택품목 ① ~ ⑯ 까지 개별 선택이 가능하며, ②, ④, ⑤, ⑪, ⑫, ⑯은 다수 품목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 59B의 경우 아래 선택품목 ① ~ ⑯ 까지 개별 선택이 가능하며, ③, ⑨, ⑩, ⑪, ⑫은 다수 품목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 59A의 경우 ②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되고, ⑪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냉장고장(일반+김치)'이 설치되며, ⑭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가스쿡탑(3구)'로 설치됩니다.
- * 59B의 경우 ⑦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되고, ⑨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냉장고장(일반+김치)'이 설치되며, ⑭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가스쿡탑(3구)'로 설치됩니다.
- * 기본형은 무상 적용, 이 외 항목은 선택 시 유상 적용됩니다. (59A의 ⑨, ⑩, 59B의 ⑦, ⑯은 제외)
- * 적용된 옵션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 또는 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적용된 옵션은 설치물의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등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적용된 옵션은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택 형	구분	기본형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단위:천원)					비고
				합계	계약금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잔금	
					(계약 시)	'26.5.27	'27.9.27	(입주 시)	
59A	① 현관	미설치	① 현관종문(1연동)	681	68	102	102	409	
	② 팬트리/보조주방	현관창고만 설치	②-1 팬트리 (경량벽, 문, 시스템선반)	1,133	113	169	169	682	* ②-1, ②-2 중 하나만 선택가능
	③ 드레스룸	미설치	③ 시스템선반+입식화장대+드레스룸 벽체 및 슬라이딩도어(패턴유리5T)	2,262	226	339	339	1,358	
	④ 거실 및 복도 (분리형)	실크도배지 마감	④-1 시트지 및 PET 마감 (침실2/3 분리형)	2,180	218	327	327	1,308	
			④-2 시트지 및 PET 마감 (침실2/3 분리형, 팬트리 추가 시)	1,929	192	289	289	1,159	* ①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불가 * ④-1, ④-2, ④-3 중 하나만 선택가능
			④-3 시트지 및 PET 마감 (침실2/3 분리형, 보조주방 설치 시)	1,356	135	203	203	815	
	⑤ 거실 및 복도 (통합형)	실크도배지 마감	⑤-1 시트지 및 PET 마감 (침실2/3 통합형)	2,317	231	347	347	1,392	
			⑤-2 시트지 및 PET 마감 (침실2/3 통합형, 팬트리 추가 시)	2,074	207	311	311	1,245	* ①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가능 * ⑤-1, ⑤-2, ⑤-3 중 하나만 선택가능
			⑤-3 시트지 및 PET 마감 (침실2/3 통합형, 보조주방 설치 시)	1,493	149	223	223	898	
	⑥ 침실1	불박이장 미설치	⑥ 불박이장(슬라이딩)	1,857	185	278	278	1,116	* 선택 시 벽체 설치됨
	⑦ 침실2/3(분리형)	불박이장 미설치	⑦ 침실2(불박이장)+침실3 (불박이장+입식 화장대 일체형)	1,753	175	262	262	1,054	* ①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불가
	⑧ 침실2/3(통합형)	반침장 미설치	⑧ 반침장	1,161	116	174	174	697	* ①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가능
	⑨ 바닥재	강화합판마루	⑨ 기능성 럼카펫(6T)	선택 시 무상제공					
	⑩ 거실간접조명	우물천장	⑩ 테두리 간접조명	399	39	59	59	242	* 기본형은 간접조명 미설치
59B	주방	⑪ 냉장고장 (일반, 김치) 설치	⑪-1 팬트리키큰장+냉장고장(일반)	173	17	25	25	106	* ⑪-1, ⑪-2 중 하나만 선택가능 * ⑪-1 선택 시 김치냉장고 설치 불가(세대 내 김치냉장고 설치 위한 별도 여유공간 없음) * ⑪-2 선택 시 냉장고장 내경 약 1,700mm
			⑪-2 팬트리키큰장+통합냉장고장	274	27	41	41	165	
	⑫ 아일랜드 식탁	미설치	⑫ 아일랜드 식탁	1,047	104	157	157	629	* 고정식(이동 불가)
	⑬ 주방벽	도기질타일	⑬ 엔지니어드스톤	388	38	58	58	234	* 선택 시 수전 위치 및 싱크볼 변경됨
	⑭ 쿡탑	가스쿡탑 3구	⑭-1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560	56	84	84	336	* ⑭-1, ⑭-2 중 하나만 선택가능
			⑭-2 인덕션 3구	583	58	87	87	351	
	⑮ 빌트인 식기세척기	미설치	⑮-1 빌트인 식기세척기(LG)	1,334	133	200	200	801	* ⑮-1, ⑮-2 중 하나만 선택가능 (가구파널형)
	⑯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만 제공 (거실+침실1)	⑯-1 거실+침실1	4,410	441	661	661	2,647	* 공간기본형 선택 시 ⑯-1, ⑯-2 중 하나만 선택가능 * ⑯-1 선택 시 선택불가
			⑯-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010	701	1,051	1,051	4,207	* ⑯-2 선택 시 선택 불가
			⑯-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통합형)	6,050	605	907	907	3,631	
	⑰ 공용욕실	일반 정풍량욕실팬	⑰ 다기능욕실팬	436	43	65	65	263	* 부부욕실 미적용
	⑲ 공용/부부욕실	원피스(수로 가림형)+비데	⑲ 비데일체형 양변기	선택 시 무상제공					
59B	① 현관	미설치	① 현관종문(1연동)	681	68	102	102	409	
	② 드레스룸	미설치	② 시스템선반+입식화장대+드레스룸 벽체 및 슬라이딩도어(패턴유리5T)	2,262	226	339	339	1,358	
	③ 거실 및 복도	실크도배지 마감	③-1 시트지 및 PET 마감 (침실2/3 분리형)	1,124	112	168	168	676	* ①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불가
			③-2 시트지 및 PET 마감 (침실2/3 통합형)	1,261	126	189	189	757	* ①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가능
	④ 침실1	불박이장 미설치	④ 불박이장(슬라이딩)	1,861	186	279	279	1,117	* 선택 시 벽체 설치됨
	⑤ 침실2/3(분리형)	불박이장 미설치	⑤ 침실2(불박이장)+침실3 (불박이장+입식 화장대 일체형)	1,753	175	262	262	1,054	* ①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불가
	⑥ 침실2/3(통합형)	반침장 미설치	⑥ 반침장	1,161	116	174	174	697	* ①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가능
	⑦ 바닥재	강화합판마루	⑦ 기능성 럼카펫(6T)	선택 시 무상제공					
	⑧ 거실간접조명	우물천장	⑧ 테두리 간접조명	399	39	59	59	242	* 기본형은 간접조명 미설치

주방	⑨ 냉장고장 (일반,김치) 설치	⑨-1 팬트리키큰장+냉장고장(일반)	173	17	25	25	106	* ⑨-1, ⑨-2 중 하나만 선택가능 * ⑨-1 선택 시 김치냉장고 설치 불가(세대내 김치냉장고 설치 위한 별도 여유공간 없음) * ⑨-2 선택 시 냉장고장 내경 약 1,700mm
		⑨-2 팬트리키큰장+통합냉장고장	274	27	41	41	165	
⑩ 아일랜드 식탁	미설치	⑩ 아일랜드 식탁	1,047	104	157	157	629	* 고정식(이동 불가)
	⑪ 주방벽	도기질타일	⑪ 엔지니어드스톤	388	38	58	58	234
⑫ 콕탑	가스콕탑 3구	⑫-1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560	56	84	84	336	* ⑫-1, ⑫-2 중 하나만 선택가능
		⑫-2 인덕션 3구	583	58	87	87	351	
⑬ 빌트인 식기세척기	미설치	⑬-1 빌트인 식기세척기(LG)	1,334	133	200	200	801	* ⑬-1, ⑬-2 중 하나만 선택가능 (가구패널형)
		⑬-2 빌트인 식기세척기(삼성)	1,100	110	165	165	660	
⑭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만 제공 (거실+침실1)	⑭-1 거실+침실1	4,400	440	660	660	2,640	* 공간기본형 선택 시 ⑭-1, ⑭-2 중 하나만 선택가능
		⑭-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570	757	1,135	1,135	4,543	* ⑭ 공간확장형 선택 시 ⑭-1, ⑭-3 중 하나만 선택가능
		⑭-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통합형)	6,600	660	990	990	3,960	
⑮ 공용욕실	일반 정품량욕실팬	⑮ 다기능욕실팬	436	43	65	65	263	* 부부욕실 미적용
⑯ 공동/부부욕실	원피스(수로 가림형)+비데	⑯ 비데일체형 양변기						선택 시 무상제공

■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비용			실별 구분 가격 (단위 : 천원)							남부방식 (단위 : 천원)			
타입	내역	계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식당	ドレス룸	계약금	증도금 1차	증도금 2차	잔금	
									계약 시	26.5.27	27.9.27	입주 시	
59A	기본공사비(A)	79,152	17,752	1,100	12,955	14,358	21,539	11,448					
	확장공사비(B)	85,942	18,419	2,101	13,564	14,975	25,356	11,527					
	계약자부담액(B-A)	6,790	667	1,001	609	617	3,817	79	1,000	1,000	1,000	3,790	
	マイ너스옵션 시 계약자 부담액	5,772	567	851	517	524	3,245	68	1,000	1,000	1,000	2,772	
59B	기본공사비(A)	79,957	20,715	1,100	15,292	15,510	27,340	-					
	확장공사비(B)	86,557	21,367	2,101	15,911	16,109	31,069	-					
	계약자부담액(B-A)	6,600	652	1,001	619	599	3,729	-	1,000	1,000	1,000	3,600	
	マイ너스옵션 시 계약자 부담액	5,610	554	851	526	509	3,170	-	1,000	1,000	1,000	2,610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マイ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5. 기본선택품목 (マイナス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マイ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 분	マイナス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マイナス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실외기실 철제 어닫이문(SD) 및 디지털도어록	욕실목재공틀, 욕실문틀 하부 층,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PL창호, 알루미늄 그릴창
② 바닥	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미루귀들)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 (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포세린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타일(현관장고 제외), 목조간이벽, 발코니도장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경량천장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장, 커튼박스,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⑤ 옥실	천장재(천장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옥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옥실장, 비데(옥실1, 옥실2), 옥실펜, 옥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옥실등기구,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콕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폐달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⑧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가구(문짝포함), 화장대, 반침가구,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시스템선반	-
⑨ 기타	발코니 수전류	설비배관, 거실월래드, 소방감지기, 침입감지기, 에어컨냉매배관(기본형 설치위치), 세대환기시스템, 보일러, 하향식 피난구, 동작감지기, 자석감지기, 생활정보기, 스피커, 세대분전반, 세대통합단자함

※マイナス옵션은 선택품목 결정기간 내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확장형 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1) : 가구, 쿡탑,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추가선택품목 (2) : 발코니 확장'은 필수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되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대한 입주자의 시공·설치는 잔금을 납부완료하고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른 실내·외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토록 해야합니다.
- ※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문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 및 설치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입주자에게 청구될 예정입니다.

6.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결식률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 납부는 별도고지서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변동 시 별도 안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 단, 주택도시기금 응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응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율로서 시증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를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이 발생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예비자 선정 시 지역우선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우선 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9.30.)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10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② 기타지역 (경기도, 인천광역시)	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지역우선 공급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순 해외여행, 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우선 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9.30.)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② 기타지역 (경기도, 인천광역시)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50% 물량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표등본상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지역우선 공급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순 해외여행, 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분양권등 포함)소유 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사전청약 당첨자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 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시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기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기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분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 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의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속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기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총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은)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 사전청약 당첨자 제외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우리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은)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첨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기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기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기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기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 <td></td><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 <td></td><td>건물</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r> <td></td><td>시설물</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기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기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자동차	37,080천원 이하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역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권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기액 중 높은 차량기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기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출산기구 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기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기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3> 출산기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부동산(건물+토지)	237,050천원 이하	258,600천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고
자동차	40,790천원 이하	44,500천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기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4년식 자동차를 2023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사전청약 당첨자 제외

■ 소득기준 적용

- 우리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6> 조희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희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추첨(10%)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추첨(10%)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생애 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잔여공급(20%)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신혼 부부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추첨(10%)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신생아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잔여공급(20%)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추첨(10%)	배점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06,76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16,709,556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추첨(10%)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신생아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추첨(10%)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추첨(10%)	배점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추첨(10%)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기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기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기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 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입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5> 출산기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304,058	7,423,620	7,897,564	8,606,954	9,316,344	10,025,734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7,704,960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0,506,76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16,709,556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1,207,214	13,197,547	14,040,114	15,301,251	16,562,389	17,823,526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1,907,665	14,022,394	14,917,621	16,257,579	17,597,538	18,937,497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4,709,469	17,321,781	18,427,649	20,082,892	21,738,135	23,393,378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5,409,920	18,146,627	19,305,156	21,039,220	22,773,285	24,507,349

• 가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 수 적용 기준
일반공급, 신혼부부·다자녀 ·신생아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일반공급, 신혼부부·다자녀 ·노부모·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위 가구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 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6> 조희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6> 조희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 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등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를 정정하는 경우 사업장(사용자)에 보수 변경 요청 및 완료 후 해당 증빙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타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 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6> 조희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아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III**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0.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②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3.6.9.)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4.9.30.)까지 주택을 소유한 (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동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 해당지역 전입일~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아래 국외 체류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 (1)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 (2)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불가
- (3)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 공급거주기간을 총족한 경우 거주기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 유지 여부,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특별공급 기당첨 여부 등을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의 무주택세대구성원(사전청약 공고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포함)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사전청약 시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청약 신청 당시 작성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청약 모집공고일 기준(2024.9.30.)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10.10.(목) 10:00 ~ 2024.10.11.(금) 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 후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는 사전청약 당첨 당시 일반·특별공급 당첨에 관계없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특별공급 신청』 아님)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위 신청일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본청약 신청을 하셔야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은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유의사항

• 주택형 확인사항

- 사전청약 시 **당첨된 주택형으로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며, 발코니 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업지구	블록	사전청약 시 당첨된 주택형	본청약 시 선택 가능한 주택형	발코니 확장 여부
동작구수방사	-	59	59	발코니 확장형

• 중복신청 금지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에 미신청(포기)한 경우,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2p 무주택세대구성원 참고) 중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 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동·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합니다.**

•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해당 본청약 신청 시 당첨자발표일[2024.10.31.(목)] 이후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됩니다.

※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시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 당첨자[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로 관리됩니다.

• **당첨자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2024.11.11. ~ 2024.11.12.) 내 구비서류 별도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이후 날짜분에 한함**]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의 본청약 당첨자 선정 시 제출서류 :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참조

•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자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됨에 따라 **거주의무 개시일로부터 3년간 거주**하여야하며, **당첨일로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관련사항은 IV. 신청 시 확인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대상자별 추천기관

지자체(철거민, 장애인), 보훈지청(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4.10.14.)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 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5.10.1. ~ 2024.9.30.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임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다자녀가구 추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기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기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기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기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추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0명	0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해당없음	0	
무주택 기 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없음	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미거주	0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해당없음	0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여,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단,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무관)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하고 25세에 혼인)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3)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25세에 혼인 이후 소유하던 주택을 26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가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가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가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노부모부양 추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입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첨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표7>** 1순위 내 동일 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전용 40㎡초과]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단계 추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종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종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공급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는 분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 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생애최초 잔여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생애최초 추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금회 공급은 공공분양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종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종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신청자의 태아 포함)]도 없는 신청자가 본 아파트 청약 신청 후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분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의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족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등·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분을 입주 전까지 우리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어, 입주도 불가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분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남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신혼부부 잔여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신혼부부 추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기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기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기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기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신청자의 배우자(예비배우자 제외)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3단계 추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참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18.12.18.까지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 (출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로 확인합니다.
-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가점기준		점수	비 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해당없음	0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0명	0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3년 초과 5년 이하	2	
	5년 초과 7년 이하	1	
	7년 초과	0	
바.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 3세 미만)	3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2세 초과 4세 이하(만 5세 미만)	2	
	4세 초과 6세 이하(만 7세 미만)	1	
	해당없음	0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603,607원	6,598,774원	7,020,057원	7,650,626원	8,281,194원	8,911,76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구원 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등·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등·호 발생 시에도 등·호 변경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6. 신생아 특별공급

■ 신청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 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출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단위 : 원]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신생아 잔여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06,76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신생아 추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합계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배점기준		점수	비 고
기준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해당없음	0	
나. 미성년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 점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해당없음	0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24회 이상	3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603,607원	6,598,774원	7,020,057원	7,650,626원	8,281,194원	8,911,76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등부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 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신생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7.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입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8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위 신청자격을 갖춘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2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은 위 신청자격을 갖춘 분에게 잔여공급합니다.

*** 1단계 우선공급(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8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전용 40㎡초과]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해당사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여,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II. 신청기준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참조)

-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 예시3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 예시4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 예시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
- 예시6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단계 잔여공급(2순위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자격요건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기타지역을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등 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IV 신청 시 확인사항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 구성원 청약자격 확인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3. 주택소유확인	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 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을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 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4.10.31.)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입주 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3. 거주의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여**됩니다.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거주의무 개시일부터 3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4.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 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 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p>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p> <p>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p>
신청방법	<p>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p>

6.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알려드립니다」참조)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 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시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 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4.10.10.(목)~10.11.(금)]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4.10.10.(목)~10.11.(금)]에 미신청(포기)한 경우에는,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사전청약 특별공급 당첨자 및 본청약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 당첨 및 계약 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서울 지역본부에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 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 사전청약 당첨자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2024.10.10.(목) 10:00 ~ 2024.10.11.(금)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 앱
		2024.10.14.(월) (10:00 ~ 17:00)		
일반공급	• 우선공급, 잔여공급	2024.10.15.(화) (10:00 ~ 17:00)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팜플렛,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원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하여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407-8222)
- 공급유형(사전청약 당첨자,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및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특별공급 접수 마감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 앱에 게시 예정입니다.

VI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PC인터넷 · 모바일 신청 (사전청약 당첨자,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특별공급신청(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일반공급신청(우선공급/잔여공급)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그 외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책임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하여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홈 위례홍보관 ☎ 02-407-8222)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서류제출(예비입주자)	선택품목 결정	계약체결(당첨자)
2024.10.31.(목) 14:00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024.11.11.(월) ~ 11.12.(화) 10:00 ~ 16:00	2024.11.13.(수) ~ 11.14.(목) 10:00 ~ 16:00	2025.2.18.(화) ~ 2.19.(수) 10:00 ~ 16:00	(전자) 2025.2.24.(월) ~ 2.25.(화) 10:00 ~ 16:00 (현장) 2025.2.26.(수) ~ 2.27.(목) 10:00 ~ 16:00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 뉴:홈 위례홍보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전자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신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 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 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우리공사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4.11.11.(월) ~ 11.14.(목)]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 제외
○	○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 직접 서명,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	④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사전청약공고일(2023.6.9.)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⑥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개명했을 경우 개명 전후 모두 발급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 직접 서명,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산기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지적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지적으로 신청한 경우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출산기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출산기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거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질병코드·출산예정일·의료기관·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야 함				
○	⑧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⑩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⑪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⑫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 위례홍보관 현장 비치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①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 직접 서명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③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⑥ 복무확인서	⑥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지역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질병코드·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			본인	※ 위례홍보관 현장 비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질병코드·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 위례홍보관 현장 비치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②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08.1.1. 전에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③ 기본증명서	자녀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 위례홍보관 현장 비치		
	○	⑦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양식 활용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전 재당첨, 주택소유사실 여부 확인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8> 참고)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②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를 증빙하고자 하거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③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를 증빙하고자 하거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 위례홍보관 현장 비치		
	○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을 인정하지 않음		
	○	⑦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전 당첨 여부 확인		
	○	⑧ 통장사본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급여 수령 내역 확인		

<표8>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포함(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입금확인증 등) * 현장수납 불가 * 계약금(분양대금+추가선택품목(1)+발코니 확장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 제외 ③ 도장 (본인계약 시 서명날인도 가능) ④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 계획서(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자료실) 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사본) * 기재금액 1억 초과 10억 이하 : 15만원 **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우편물 취급소 불가), 은행에서 구입하여 계약 시 사본 첨부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② 계약자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①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td> <td>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양식 다운로드 : 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자료실</td> </tr> <tr> <td>② 당첨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td> <td>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td> </tr> <tr> <td>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구비해야 인정</td> <td>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구비해야 인정</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양식 다운로드 : 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자료실	② 당첨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양식 다운로드 : 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자료실							
② 당첨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구비해야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구비해야 인정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http://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 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 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을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10:00~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체결 필요)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홍보관 및 펌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문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우선/잔여)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 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혜택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시기 바라며, 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을 경사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주 방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옥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높낮이조절 세면기		거실	비디오픈 높이조정, 이간 센서등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 최초 현장계약 체결기간 (2024.2.26. ~ 2024.2.27.)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 사업 여건

- 동작구수방사(공공분양)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95호, 2023.06.12)로 승인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동작구수방사)"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단지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계획,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변경, 보상 및 공사 여건 변경에 따라 사업준공 등 추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동쪽에 지하철 9호선 노들역, 서쪽에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지하철이 위치하여 열차 소음·진동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쪽으로 서울특별시도 제88번(올림픽대로), 서울특별시도 제45번(노들로), 남측으로 서울특별시도 제21번(노량진로)에 인접하고, 북측으로 지하철 1호선(경부선)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지상), 동쪽으로 교회가 단지에 인접함에 따라 소음·진동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으로 서울시에서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어, 해당사업 추진에 따른 고가도로 설치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서측 진입도로

의 노량진로 접속위치 변경 및 접속도로 폭이 축소될 수 있으며, 차량통행, 교통, 소음, 분진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쪽에 한국전력 노량진동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남서쪽에 노량진 119 안전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구급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근 종합대병원 응급실 구급차 운행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인근에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본동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해당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 소음, 분진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녹지 등 상부에는 도시기반시설인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신호등 등), 소화전 및 도로교통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시설물에 대해 이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추진 과정에서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을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단지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주변 기반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기반시설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입주 시까지 조성되지 못할 수 있으며, 주변단지 및 기반시설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단지는 공공분양·행복주택 등과 함께 군관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자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학교시설 배정 관련 내용은 서울시 교육청 콜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에 해당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조망, 일조, 도로, 진입로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청약 신청 전 아래의 단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 단지는 국방부 위탁개발사업으로 공공분양, 군관사, 행복주택이 함께 계획되어 있고 각 소유자별로 대지지분을 공유하며 통합관리사무소(1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의 출입구는 동측(주출입구)과 서측(부출입구)에 위치하고, 사육신공원과 연계된 별도의 출입구는 없습니다.
- 단지와 인접한 기반시설(공원, 녹지, 도로 등)과 계획과 차이에 따라 단지 경계에 법면 또는 옹벽, 방음벽 등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육신공원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 및 경관저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 서측 경계부에 설치되는 방음벽(펜스)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펌플릿 상 투시도와 같이 표현하였으나, 본 시공 시에는 관계기관 협의 및 소음도 측정 등 결과에 따라 디자인, 형태, 색상이 변경되며 알루미늄, PVC판넬 등 불투명한 재질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서측 출입구 주위 철도 광고판, 창고시설, 담장 등으로 경관저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내 남측(사육신공원)은 가공조경석과 자연석, 석재옹벽(H:3 ~ 17m)이 설치되고 101동, 104동, 105동의 경우 산벽 및 옹벽 조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 설치되는 법면 또는 옹벽, 방음벽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시설로서 입주 이후 유지관리 의무는 입주민에게 있으며, 저층 세대의 조망 등 경관이 일부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 법면 또는 옹벽, 방음벽 등 시설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유지(공원 등)에 영구 존치되는 앵커 설치 예정으로 이에 따른 점용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계획고는 추후 실시설계 및 조성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은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인접한 공원으로 인해 소음, 사생활 침해, 경관저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 옥상에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광 패널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오수'의 경우 단지 내 정화조에서 처리 후 사업부지 내 인입된 시 오수관로에 연결 계획하였으며, 단지 내 오수처리시설 가동으로 인한 악취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 시 전 세대 사다리차 이용 불가하며, 지하주차장을 통한 이사를 계획하여야 합니다.
-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신설/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형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도 제45번(노들로), 지하철 1호선(경부선) 철도(지상) 등 단지 주변 간선도로, 철도의 차량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로 경관저해 등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서측(지하철 1호선, 철도), 북측(서울특별시도 제45번 노들로)은 단지 주변 간선도로, 철도의 차량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H:15~17m) 설치로 102동, 103동, 104동의 저층 세대의 조망 등 경관이 일부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관찰 지자체에서 노선결정 및 운영·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결정 및 운영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철도 시설물 및 인접 건축물(교회)로 인하여 지구 경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스카이라운지는 주동 내부에 있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로 인해 승강기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39대(급속 1대 포함) 설치되어, 지하 주차장(1층 ~ 3층) 각층에 분배하여 배치하였습니다.
- 외부 입면 특화를 위해 계획된 커튼월루 유리미감 및 주동 외부 창호의 빛 반사 영향으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주변 빛반사 영향에 따라 설치구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형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단지에 대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 오류 등 경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주변 다수의 한전 가공전주 및 가공통신선로가 설치되어 있어(이설 및 철거 없이 존치 예정), 세대 미관·조망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동 지구는 국방부 위탁개발사업으로 군관사(104동, 105동),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101동, 102동, 103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101동 1층은 작은도서관, 스마트멀티룸, B1층은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근처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1층은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 주민카페가 설치되어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근처에 어린이놀이터, 1층은 피트니스센터, 방과후돌봄, 32층은 스카이라운지가 설치되어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이 101동·102동·103동 내 혼합 배치되어 있습니다.
- 104동, 105동은 전체 세대가 군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분양이나 임대를 하지 않습니다.
- 단지 공공시설물(일부시설 제외)은 공공분양주택, 행복주택 및 군관사 입주민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 단지 북쪽에 관련 법규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약 10미터 내·외의 공공조경 구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공공조경 구간 내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녹지 및 산책로가 조성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등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공조경의 조성 목적을 고려하여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군관사(104동, 105동) 1층에 피트니스센터,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일부시설의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군관사(104동) 34층, 35층에 게스트하우스 및 스카이라운지가 설치되어 일부시설의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안등 및 방범 CCTV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경관조명이 적용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공용전기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문주의 형태 및 미감, 주동 저층부 외부마감은 설계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의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및 시설물 등 조경계획은 현장여건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 등에 따른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외 도로(보도), 어린이놀이터(물놀이시설 등) 및 운동·휴게공간 등 주민이용시설의 조성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소음 발생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도로 및 지하주차장 진입램프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전조등 및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동과 인접하여 설치된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대) 주변으로 약취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니 계약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세대수 및 동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 배치되어 있으며, 연접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동 전후면 녹지 내 옥외연결송수구, 매물형 가스밸브, 소방안전매트(이동식) 설치 구간 등에는 시설물 설치 및 수목(교목 등) 식재가 불가함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단지 주·부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 및 측벽 경관조명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꾸밀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한 세대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관조명의 설치위치 및 개소 등을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시설 운영방안에 따라 단지 내 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녹지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 및 시설물은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영구배수로 인한 공용전기요금 및 유출 저하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 및 지상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뿐만 아니라 시공됩니다.
- 스마트우편함은 각 동 1층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은 각 동 지하 1층 출입구에 설치 예정으로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으며, 무인택배 보관수량은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계절창고는 동별 세대수 비율기준으로 설치되지 않아 동별 계절창고 수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절창고는 각 세대별로 지정되지 않으며, 입주 후 자체 내부규정 등에 의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 단지명·동표시·아파트 문양·B1로고·벽체출눈·외부조명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전 기준으로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 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의 미감사당은 지하층 및 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장 및 계단실에 환기 또는 채광창이 설치되어 층별·동별·타입별로 여건에 따라 창이 없거나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동 전면에 연결송수관설비 구조물이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등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속동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 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 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준공 및 입주 후 일정기간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을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단지 내 도로에는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이 설치됩니다.

(주변도로 및 옹벽 등 구조물)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시공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담장, 옹벽 등 구조물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및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가스배관 매립설치로 보도블록 및 포장면에 가스관로 라인마크가 시공됩니다.

(아파트)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커튼월이 설치되는 일부세대의 외부에 면한 PL창호 규격은 그 외 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스 입상라인은 세대별 외벽에 설치되며, 가스입상관 방범시설은 대리석 기단부 상단까지 설치됩니다.
- 제연용 급기판이 각동 지하 1층 및 지상 18층에 위치하여 인근 세대의 경우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의 점검을 위하여 점검구 또는 점검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등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 및 외부 입면분할창(세대 내 밸코니난간 미설치) 설치로 전 세대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니 지하주차장을 통한 이사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미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미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밸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층별·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보일러 배관의 외부 돌출시공으로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을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과 포함 품목과 유상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시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전시품입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기존 미감자재손상에 의한 하자 등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단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주방가구, 강화합판미루,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창호, 부대시설 그릴고정장, 부대시설 창호,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 벽돌, 속빈콘크리트블럭, 보차도경계석, 도로경계석, 인조회강석블록, 오수배수용PVC 파이프, 가압급수펌프, 배수용수중모터펌프, 조립식 물탱크, 중앙관제장치, 자동제어, 발전기, 전압기, 태양광, 경관조명, 수배전반, 전동기제어반, CCTV, 차량출입 및 주차관제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할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 시 세대 내부에는 관련 법규에 맞추어 시공됩니다.
- 세대 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미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불밖이장류(신발장, 냉장고장, 주방가구 등 포함)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미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뒷면의 벽체 타일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밸코니에 세탁 건조기 또는 자동빨래건조 기능 사용 시 온·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증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 및 정압기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설치 그릴창 미개방 가동 시 냉방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승강로 및 기계실, 권상기실과 인접되어 승강로 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환기설비가 설치되며, 최하층 엘리베이터홀에만 제습기가 추가설치 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기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 내에 환기창은 전 층 설치되나,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어,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총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층)

- 지하주차장 통과높이는(차량 진입 가능높이) 지하 1층(데크층부분 포함) 2.7m, 지하 2층 2.3m, 지하 3층 2.3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및 제연팬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저수조, 펌프실 등 공용시설들이 위치하여 인근 동은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발전기의 주기적 시험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발생하여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분양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101동, 102동, 104동 지하층 인근, 펌프실·저수조: 101동, 102동 지하층 인근, 전기실·발전기실: 101동, 102동 지상 배급기구]
- 각 동 지하층의 계절창고의 경우 제습기, 배기팬이 설치되어,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미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어 인근 동(101동)에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일부구간 벽체배수판이 설치되며, 인접한 배수 트렌치 및 주차장비닥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 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동은 차량 진·출입 시 경보음 발생과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는 101동, 103동, 105동 옥탑 지붕층 및 지하주차장 훈룸 2개소에 설치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설치를 원할 경우 입주 이후, 관리소와 협의 후 별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됩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급속:1대, 완속:38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기차 충전설비의 기준 설치위치 이동 및 추가설치 불가)
- 지하주차장 내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훈룸 및 환기탑 외부 마감은 지정 석재로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훈룸이 일부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훈룸 상부에 환기팬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되고, 일부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환기구, 연결송수관 설비,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 정화 및 배출을 위한 단독정화조(부페탱크식)가 설치(101동, 102동, 104동 인근)되어 있고 정화조용 배기관은 동 내부 공용PD를 통해 옥탑층까지 설치됩니다. 101동, 102동, 104동 옥탑층의 정화조용 배기로 인해 상부 세대 일부에서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 설치된 공동주택 정화조 청소를 위해 작업차량이 주기적으로 단지 내부로 진입할 수 있으며, 작업 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입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로 연결되는 통로는 없으며 지상을 통한 이동이 필요합니다.
- 택배 배달용 탑차 출입은 지하 1층만 가능합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 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동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하 671대(지하 1층 216대, 지하 2층 225대, 지하 3층 230대)로 세대당 1.2대이며,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2대로, 총 673대로 계획되며, 그중 23대는 장애인 주차장입니다.(장애인 주차장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 지하주차장을 군관사(208세대)와 공동사용 합니다.
- 주차구획은 일반주차, 확장주차, 여성우선주차, 임산부주차, 장애인주차, 경차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주차(전기)로 구성되며,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구성내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시설의 세부이용에 관한 사항은 군관사, 행복, 분양주택 입주자 등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일반형 2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스마트멀티룸,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 주민카페, 주민공방, 피트니스센터,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방과후돌봄, 키즈스테이션, 경비실, 근로자휴게실, 어린이집 등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설명청, 위치,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의 각 실에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에는 실내가구나 컴퓨터 등 내부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관리사무소, 스마트멀티룸, 실내놀이터, 주민카페, 주민공방, 스카이라운지, 키즈스테이션은 바닥 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경로당,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방, 피트니스센터 탈의실, 게스트하우스, 방과후돌봄, 근로자휴게실, 어린이집은 바닥 난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관리사무소, 경로당, 스마트멀티룸,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 주민카페, 피트니스센터,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방과후돌봄, 키즈스테이션, 경비실, 근로자휴게실, 어린이집에 냉난방겸용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스마트멀티룸,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 주민카페, 주민공방, 피트니스센터, 일부 스카이라운지, 104동 게스트하우스, 방과후돌봄, 키즈스테이션, 경비실, 근로자휴게실, 어린이집의 경우 실외기실에 실외기가 배치되어, 실외기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상부에 설치되는 시설(103동, 104동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등)의 에어컨 실외기(실내, 실외), 환기유닛 가동 및 오배수소음으로 인한 인접 및 상하세대에 소음, 진동, 먼지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 피트니스센터에 운동기구가 제공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의자, 소파 등 이동식기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미제공)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단지이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공사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상 결과에 따라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옥탑 및 지붕 층)

- 102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 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강우 등 바람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의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각 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접광판이 설치되어,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 및 태양광 모듈의 빛 산란에 따라 일부 세대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밤크니 등

(마감자재 스펙 관련)

- 미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패플릿 등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미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 패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및 자재는 생산종단 시 동일성능 제품 및 자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및 다용도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 수전, 실외기실에 선흡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당해 단지는 개별난방단지로서 각 세대별로 보일러가 별도로 설치되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내에 보일러 가스배관, 보일러연도, 가스계량기, 계량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수전, 오배수관, 통기관, 스프링클러헤드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설치가구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 제원에 따라 세탁기와 건조기의 병렬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전원용, 보일러 및 발열선용, 일산화탄소 경보기용 콘센트만 설치됩니다.
- 다용도실 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 문과 벽 및 기타 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탁실 출입을 위하여 출입문을 탈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다용도실은 비단방구역으로 해당 실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을 겨울철 동파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일부 발코니에 선흡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흡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 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드레인 및 배관의 위치와 개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침실1 발코니 천장에 자동빨래건조대가 설치되어 사용 시 주변 시설물과 일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동빨래건조대가 시설되는 실은 자동빨래 건조대 자체조명이 리모컨으로 점등되어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빨래건조대의 조명기구는 LED등으로 임의탈착이 불가합니다.)
- 개별난방 방식으로 다용도실에 개별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 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 등 하절기 온도상승으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오작동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 환기가 필요합니다.
- 세탁기 배치방식에 따라 금수관, 출수관, 전원선 길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전면은 보일러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공간이므로 세탁기를 보일러 전면에 설치 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설치 시 선반을 일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침실1 발코니의 경우 우수 및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원활한 피난을 위해 상·하층 간 피난구의 수평거리가 일정 간격 떨어져 시공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외기실에는 어답이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증간소음 및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하부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로이므로, 하향식 피난구에 물건 적재 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이 불가하며 원활한 피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외기실은 물청소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발코니 내 원강기가 설치되는 세대(하부가 필로티거나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는 최하층 세대 중 일부)는 101동(3층 1, 2, 3, 4호) 세대, 102동(3층 1, 2, 3, 4호) 세대, 103동(3층 1, 2, 3, 4호) 세대입니다. 앞에 언급한 세대를 제외한 3층 ~ 최상층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사용 시 반드시 실외기실 그릴을 개방한 상태에서 사용 바라며, 미개방 사용 시 에어컨 성능저하 및 온도상승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9층 1호 라인의 직하층은 제연환류 및 PIT로 구획되어 있으며, 19층 1호 라인의 하향식피난구를 이용한 피난경로(17층 1호 라인으로 피난 또는 18층 PIT로 피난 후 E/V홀로 이동 등)는 관련 소방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환기)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 급·배기)을 적용하며, 덱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거실과 침실, 주방 등 천장에 시공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급배기 디퓨저 위치는 실내마감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덱트 배관 등이 실외기실 천장에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가전제품 설치 시 간섭이 될 수 있으며, 내부마감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의 설치위치는 상부층 하향식피난구 위치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세대환기 유닛 전원용 콘센트가 설치 예정입니다.

(세대미감)

- 주방 전기콘센트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을 실제 시공 시 주택전시관, 팝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관 중문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현관이 실로 구획되지 않아 현관 소방화재감지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불밖이장류(신발장, 냉장고장, 주방가구 등 포함)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뒷면의 벽체 타일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을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물딩, 목문틀 및 시트미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 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으며, 천장도배지는 습기에 의한 부분적 들뜸(울음)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틸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세대 아트월 부위와 경량벽체인 부분은 별도 보강하여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거실 아트월 및 주방벽 하부는 걸레받이가 미시공됩니다.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구 한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월 나누기는 현장 어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욕실, E/V홀 등의 바닥 단자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창호를 가구 등으로 임의로 가릴 시 누수, 결로 등의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라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는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매립 다운라이트로 설치되며 위치이동은 불가능합니다.
- 최상층 세대의 주방 발코니 조명기구와 거실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 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됩니다.(실외기실 조명기구는 전열교환기 및 하향 피난구로 인하여 전층 벽부형으로 설치됩니다.)
-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게이트웨이와 통신하며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네트워크 스위치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통화서비스, 대기전력차단서비스(전체 콘센트의 약 30%),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 연동)를 제공합니다.
- 전기 세대분전반은 침실2 내, 통신단자함은 현관창고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작감지기의 경우 최상층은 세대 외부창호 측면부 각 1개소 설치되며, 그 외의 층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부 1개소 설치됩니다.(최상층 발코니 부위는 벽부형)
- 스마트홈 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동(현관센서 등 제외), 멀리베이터 호출 등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외부날씨(온도, 미세먼지정보)가 표현됩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종문, 팬트리, 침실1 드레스룸 등 구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팝플릿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방)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모델하우스와 달리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워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바닥이 보일 수 있고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 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 또는 침실)에 의해 통합제어 됩니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하이브리드록탑용(가스차단/전기차단)으로 설치됩니다. 전기록탑 옵션 선택 시에도 주방천장에 가스감지기가 설치되며, 상부장 하부에 가스 공급용 배관 및 가스차단기 설치 후 캠미감 처리됩니다.
- 마이너스옵션의 경우, 주방가구 상부장에 설치되는 주방용 자동식소화기는 현장납품 또는 소방준공필증을 위해 상부장 없이 기설치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의 경우, 주방용 자동식소화기는 입주자가 주방가구 상부장 부착 시 입주자 요청에 따라 시공사가 해당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입주자는 레인지후드를 주방용 자동식소화기 설치 가능한 공용배기시스템 및 댐퍼와 연동되는 제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주방 배기는 공용배기방식으로 세대 레인지후드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아일랜드식탁, 주방벽, 쿡탑, 냉장고장 등 구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팝플릿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방싱크수전의 경우 터치 시 절수수전으로 일부 정전기의 우려가 있습니다.

(세대욕실)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장재는 ABS판넬로 시공되며 천장에 점검구 시공 예정으로 욕실 출입문 개폐 시 공기압차로 인한 천장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욕실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욕실 일부공간은 바닥난방이 설치되어, 인근 온도조절기(침실)에 의해 통합제어됩니다.
- 욕실천장에 설치되는 옥실판은 동별 세대배치에 따라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옥실판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부부욕실 내 레인형 샤워기 이용 후 샤워헤드 내 잔류수가 떨어질 수 있으며, 샤워기는 절수형으로 설치되어 수압이 다소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욕실 양변기는 관련법에 따라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 부부욕실(욕실2)에 부착되는 무선형 비상호출버튼을 누를 경우 월패드, 관리실, 경비실에 경보음이 울리게 되며, 설치 제품에 대한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의 경우, 욕실의 금수 매립박스 및 일부 서비스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 설치 시 유지관리에 문제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적절한 배기 팬 설치로 인해 외부 오염된 공기 또는 냄새가 욕실 내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에 따라 욕실천장 내 연기감지기 방화댐퍼가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욕실 인근에 개별연기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욕실장 뒷면의 벽체 타일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전제품)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옵션 선택 시 해당 없음)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되며, 거실에서 냉매박스 위치는 타입에 따라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거실 에어컨 콘센트는 미설치되며 실외기실에 실외기실용 스위치 박스가 설치됩니다.
- 거실 에어컨 실내기 전원은 냉매박스 내 매립배관을 통해 공급되므로 별도의 전원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침실1 에어컨 실내기 전용 전원콘센트가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추가 시 침실1의 에어컨 전원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전원은 실외기 및 냉매박스를 통해 실외기실에 매립시공될 예정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좌우타입에 따라 발코니 및 실외기실 등에 관련 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납품불가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시스템에어컨(옵션)은 무선 리모컨을 통해 작동되어 세대 내 월패드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월패드가 설치되며, 방문자확인, 공동현관 문열림, 조명제어(디밍제어)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팝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사항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오염토 처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모형은 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입니다.
- 단지 북, 서측 경계부에 설치되는 방음벽(펜스)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팝플릿 상 투시도와 같이 표현하였으나, 본 시공 시에는 관계기관 협의 및 소음도 측정 등 결과에 따라 디자인, 형태, 색상이 변경되어 알루미늄, PVC판넬 등 불투명한 재질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협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단지를 방문하여(현장은 출입불가)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미감시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팝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의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시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 미감품질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외관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시설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종합보육센터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최초 계약 신청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균형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팝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 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시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전금완납 포함)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을 위해 한전주 또는 한전폐수가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시공 중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한전주 및 통신선로(가공)는 철거나 이설 없이 존치될 예정이며,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 배치방식에 따라 급수관, 출수관, 전원선 길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전면은 보일러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공간이므로 세탁기를 보일러 전면에 설치 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설치 시 선반을 일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대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성능부문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구조관련 등급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	★
	화장실 금배수 소음	★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 절토 · 성토량(땀깎기 · 훑쌓기를 한 양) 최소화	-
환경관련 등급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생활환경 등급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자연지반 녹지를	★★★
	생태면적률	★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화재 · 소방 등급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균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 용
외벽(직접면)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창호(직접면)	적 용
창호(간접면)	적 용
지붕	적 용
바닥(직접면)	적 용
바닥(간접면)	적 용
바닥(층간바닥)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스마트 생활정보기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	적 용

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67,057,651
	기간이자	10,735,379
	필요적 경비	143,612
	그 밖의 비용	8,189,822
	계	186,126,464
토목	토공사	3,126,210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6,550
	옹벽공사	2,070,921
	석축공사	21,378
	우·오수공사	265,469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4,088
	도로포장공사	77,382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14,088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1,122,233
	부대시설공사	925,982
	계	7,634,301
	공통가설공사	867,817
	가시설물공사	1,345,986
	지정 및 기초공사	201,647
건축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8,390,261
	용접공사	-
	조적공사	859,602
	미장공사	1,068,092
	단열공사	1,236,763
	방수·방습공사	863,095
	목공사	1,414,309
	가구공사	855,894
	금속공사	2,342,716
	지붕 및 출통공사	93,330
	창호공사	2,218,289
	유리공사	485,137
	타일공사	1,026,525
	돌공사	863,561
	도장공사	615,874
공사비	도배공사	252,577
	수장공사	422,664
	주방용구공사	-
	잡공사	481,546
	계	25,905,685
	급수설비공사	603,688
	급탕설비공사	106,062
	오배수설비공사	1,951,358
	위생기구설비공사	892,364
	난방설비공사	842,481
	가스설비공사	251,142
	자동제어설비공사	59,904
	특수설비공사	81,997
	공조설비공사	194,178
	계	4,983,174
기계설비	전기설비공사	2,871,399
	정보통신공사	1,295,752
	소방설비공사	3,720,808
	승강기공사	1,086,460
그 밖의 공종	계	8,974,419
	일반관리비	2,031,103
	이윤	3,368,613
그 밖의 공사비	계	5,399,716
	설계비	995,247
	감리비	375,982
간접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879,695
	분담금 및 부담금	1,474,766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432,230
	계	4,157,920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7,125,385
	합계	250,307,064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천원 미만 절사)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가.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나. 하나감정평가법인
192,153,260천원	190,491,992천원	193,814,527천원

9.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계	기간 이자	출막이 공사비	기타 비용	계	주택품질 향상 기산비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친환경 주택건설 추가비용	법령개정에 따른 주거설비 기산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기타비용	지하 주차장 충고증가 추가비용
금액	21,933,355	12,348,061	5,797,916	3,787,378	8,195,770	518,446	2,206,126	1,323,778	177,650	408,682	747,742	85,370	1,012,570	87,270	1,628,136	

10.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지구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동작구수방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20-82-09373)	신동아건설(주) (106-81-33808) 금호건설(주) (104-81-31309)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11. 견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뉴:홈 위례홍보관	
 <p>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복정역 1번 출구 앞)</p>	<p>■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복정역 1번 출구 앞) ※ 주택전시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오시는길 [지하철] 수인분당선 / 8호선 복정역 하차 후 1번 출구 [버스] 복정역 1번 출구 하차 (일반버스) 302번, 303번, 422번 / (광역버스) 1650번, P9301번, P9302번</p> <p>■ 운영기간 [사전 청약 당첨자] 2024.10.2.(수) ~ 2024.10.5.(토) (운영시간) 10.2.(수) : 13:00 ~ 17:00 * 10.2.(수)는 13:00 오픈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0.3.(목) ~ 10.5.(토) : 10:00 ~ 17:00</p> <p>[사전청약 당첨자 외] 2024.10.6.(일) ~ 2024.10.8.(화) (운영시간) 10.6.(일) ~ 10.8.(화) : 10:00 ~ 17:00</p> <p>※ 사전청약 당첨자 관람일자에는 사전청약 당첨자만 관람 가능합니다. (당첨자 확인 후 관람) ※ 해당기간 중 주말 및 10.3.(개천절) 개방 ※ 사전방문예약 없이 관람 가능</p>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	분양문의
<p>■ 주 소 : www.lhds.co.kr</p>	<p>■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p> <p>■ 뉴:홈 위례홍보관 : 02-407-8222 (평일 09:00 ~ 17:00)</p>



서 울 지 역 본 부